광주 도산동 우방아이유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5년 공공건설임대)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 12. 23.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이 기간 내인 사람이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은 「주택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청약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으로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
■ 당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단위 청약자역 확대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2.2.27)에 따라 주택의 공급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2014. 12. 23.)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 제3항 제5호에 의거하여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함. 또한, 전라남도 내 청약예금 미실시지역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본 아파트 1순위에 청약이 불가하여 3순위 청약만 가능합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1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의 제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로 신청시 1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자 중 당첨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형의 1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하여야 하며, 또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세대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합니다.

청약대한 등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에 해당되며, 재당첨제한 적용 대상입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포함)는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1항제2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부정당첨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어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청약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가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 · 호수 배정후에 발생하는 미계약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포함)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금융증)하지 않고 신청한 가점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착오로 부적격자가 신청하여 당첨될 시에는 계약 및 청약관련 예금통장 자사용이 불가합니다.

과거 주택당첨사실 조회방법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포함)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관련업무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당첨사실조회 ⇨ 과거당첨사실조회 ⇨ 주택청약 로그인공인인증 확인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신청자 본인 및 세대에 속한 자(직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검색하여야 함.

입차권 양도 · 전대금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대주택을 입래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입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입차권을 양도하거나 입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동 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입대주택에 대하여는 입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자세한 사항은 "입대주택법」 제19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 1건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주(신청자의 중복청약 또는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가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통장종류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특별공급 신청자는 향후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자격으로 신청 불가)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향후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자격으로 신청 불가)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함.

세대주 인정기간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단,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부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인정기간을 산정.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일을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세대주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함.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원 포함)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그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 포함) 한번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를 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무허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단위 청약자역 확대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2.2.27)에 따라 주택의 공급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2014. 12. 23.)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 제3항 제5호에 의거하여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함. 또한, 전라남도 내 청약예금 미실시지역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본 아파트 1순위에 청약이 불가하여 3순위 청약만 가능합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1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의 제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로 신청시 1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자 중 당첨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형의 1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

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단,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산의 경우에 주민등록 따라 60세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으로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자격을 기준한 자 또는 입주대책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자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
■ 청약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순위 청약통장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1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건너의 자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본 아파트 1순위에 청약이 불가하여 3순위 청약만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순위별 신청자격

1)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순위별 신청자격

구 분	주택형(㎡)	순위	신청자격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79.6397	1순위	입주자저축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 청약예금 가입금액이 6개월이 경과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이상인 자로서 청약예금 가입은행에 청약금액 전액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 청약부금 가입금액이 6개월이 경과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이상인 자로서 청약부금 가입은행에 청약금액 전액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 청약저축 가입금액이 6개월이 경과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이상인 자로서 청약저축 가입은행에 청약금액 전액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 면적별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써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가입은행 및 APT2YOU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한 자
		2순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금액이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써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가입은행 및 APT2YOU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한 자
		3순위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단, 만6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이상 소유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해서 감점은 적용됨)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금융증)하지 않고 신청한 가점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착오로 부적격자가 신청하여 당첨될 시에는 계약 및 청약관련 예금통장 자사용이 불가합니다.

2) 국민주택 순위별 신청자격

구 분	주택형(㎡)	순위	신청자격
국민주택	59.7926A 59.8407B 59.5443C	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 배정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동일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서를 따름.
– 동일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서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⑤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⑥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람
– 기간산정시 세대주인정기간인 주민등록표등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 무주택 세대주기간 산정 예시 : 무주택기간이 7년이고 세대주기간이 5년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임.
– 부양가족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 · 비속)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① 배우자는 주민등록의 분리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
②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 외국적 동포
③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자의 직계존속만 해당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됨),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④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됨.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구 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용면적 85㎡이하	250 만원	200 만원

■ 당첨자 선정방법
–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특별공급 당첨자의 경우에 준하여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 적용을 받으며 가점항목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특별공급 당첨자의 경우에 준하여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당첨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청약 · 종별 · 면별 · 측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순위 내에서 청약신청 접수일자 순으로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청약신청접수를 받음(단, 3순위까지 신청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일반공급

■ 일반공급 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 12. 23)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단,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산의 경우에 주민 따라 60세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으로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자격을 기준한 자 또는 입주대책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자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
• 청약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순위 청약통장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1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건너의 자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본 아파트 1순위에 청약이 불가하여 3순위 청약만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순위별 신청자격
1)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순위별 신청자격

구 분	주택형(㎡)	순위	신청자격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79.6397	1순위	입주자저축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 청약예금 가입금액이 6개월이 경과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이상인 자로서 청약예금 가입은행에 청약금액 전액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 청약부금 가입금액이 6개월이 경과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이상인 자로서 청약부금 가입은행에 청약금액 전액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 청약저축 가입금액이 6개월이 경과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이상인 자로서 청약저축 가입은행에 청약금액 전액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 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한 자)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2순위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단, 만6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이상 소유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해서 감점은 적용됨)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금융증)하지 않고 신청한 가점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착오로 부적격자가 신청하여 당첨될 시에는 계약 및 청약관련 예금통장 자사용이 불가합니다.

2) 국민주택 순위별 신청자격

구 분	주택형(㎡)	순위	신청자격
국민주택	59.7926A 59.8407B 59.5443C	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 배정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동일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서를 따름.
– 동일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서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⑤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⑥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람
– 기간산정시 세대주인정기간인 주민등록표등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 무주택 세대주기간 산정 예시 : 무주택기간이 7년이고 세대주기간이 5년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임.
– 부양가족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 · 비속)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① 배우자는 주민등록의 분리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
②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 외국동포
③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자의 직계존속만 해당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됨),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④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됨.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구 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용면적 85㎡이하	250 만원	200 만원

■ 당첨자 선정방법
•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특별공급 당첨자의 경우에 준하여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 적용을 받으며 가점항목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특별공급 당첨자의 경우에 준하여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당첨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청약 · 종별 · 면별 · 측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순위 내에서 청약신청 접수일자 순으로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청약신청접수를 받음(단, 3순위까지 신청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최대 2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각 주택형별 선정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할 경우 낙찰자 전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함)
• 단,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는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하여,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며, 이 경우 주택재공급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예비입주자는 신청형별 접수기 전원을 대상으로 일에서 먼저된 '동일순위내 접수일'과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청약신청접수를 받음(단, 3순위까지 신청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청약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 청 자 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로써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자격을 기준한 자 또는 입주대책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자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혼인 이후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이어야 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개월 30개처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금융증)하지 않고 신청한 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세대주 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중 선착순에 의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